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13236
----------	-------

제안연월일 : 2025. 9.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140호)	최민희의원	2025.4.25.	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나.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8.27.) 상정/제안설명/심사
시청각미디어통신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2211765호)	김현의원	2025.7.28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9.)에서 위 두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9. 11.)에서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다. 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라. 방송·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해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통신의 이용자 복지 증진과 정보 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 정보 신뢰성 확보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형성을 위한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과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통신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
성을 유지하고,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와 함께, 민주
적 통제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
18호까지,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8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④ 비상임인 위원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 · 언론학 · 전자공학 · 통신공학 · 법률학 · 경제학 · 경영학 · 행정학 그 밖에 방송 · 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방송 · 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 ·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 · 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1호, 제3호, 제4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인 사람

②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정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 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

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 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통신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방송미디어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제청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7.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재승인·변경승인·등록·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취소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변경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1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승인·변경승인·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12.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15.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16. 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8.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9.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21.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4.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5. 방송의 진흥·규제 및 통신의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6. 방송의 진흥·규제 및 통신의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8.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의 운용·편성·판매·유통 및 전송 등에 관한 사항
29.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0.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분쟁조정, 시정요구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31.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2.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4장 위원회의 운영

-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심의위원장)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 제18조제5항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 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20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23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

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본다.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6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5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2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

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장은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 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심의위원장을 제외한다),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①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

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 관련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하 이 조에서 “방송통신위원회등”이라 한다)이 행한 행위나 방송통신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승계사무와 관련된 시행령·규칙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규칙 등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행위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전에 국가가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기금 또는 국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경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⑥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조직, 운영, 보수 등은 이 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의한다.

⑦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으로 본다.

제6조(심의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심의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회가”로 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

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5제2항 전단, 제8조의7제2항제1호 및 제1의2호, 제266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⑦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 나목,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⑫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 및 제5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제39조, 제4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⑮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의3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⑩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2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2.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중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거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를 “전문편성 또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

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해당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 지분의 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3. 제85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제85조의2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때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7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

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2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규칙”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69조의2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호, 제7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76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6조의3제2항 본문, 같은 항 본문의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의4, 제76조의5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80조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5조의2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제86조제3항, 제90조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제9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96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7조, 제98조제1항 및 제3항, 제98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시·

도지사에게”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03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 제27호 및 제28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방송법」 또는”을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

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제4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⑮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⑯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4항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로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㉒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㉓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㉖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7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제70조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0조제8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16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부터 같은 조 제4항 전단까지, 제3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7조,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제38조의2, 제43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㉘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
·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26조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의15제2항, 제449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를 “여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㉖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5제5항 전단, 제22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9제2항, 제22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28조제4항제3호 후단, 제32조제2항, 제32조의7제2항, 제32조의13제6항,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제32조의14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제32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1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7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제5호의3 후단,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5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부터 같은 조 제5항 본문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부터 같은 조 제3항 본문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52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5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 제2호의2 및 제4호의9,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6제5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6제5항, 제92조제1항 후단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으로 한다.

㉓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㉔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의4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방송법」 제9조제1항”을 “「방송법」 제9조제1항·제2항”으로,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

원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이해관계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로 한다.

제62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89조제3호, 제9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㉞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6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3항제23호, 제60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9항 및 제10항, 제64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9조, 제73조제5호,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의3, 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4조의7제3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로 한다.

㉟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0조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㊱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㊲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㊳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④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④③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3항,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제14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